기획재정부

2022년 세제개편안

역동적 경제, 합리적 세제

역동적 혁신성장을 통한
성장-세수의 선순환

경제 활력 제고
- 기업경쟁력 제고
- 일자리·투자 세제지원 강화
-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
- 금융시장 활성화

민생 안정
- 서민·중산층 세부담 완화
- 소상공인·중소기업 지원
- 지역 균형발전 강화
- 부동산세제 정상화

조세인프라 확충
-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
- 조세회피 관리 강화
-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

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
- 납세자 권익 보호
- 납세편의 제고

경제 활력 제고

•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.

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

과세표준	현 행	개 정 안
2억원 이하	10%	10% (중소·중견기업)
2~5억원	20%	20%
5~200억원		
200~3,000억원	22%	22%
3,000억원 초과	25%	

2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

	해외자회사	배당	국내모회사
현 행	해외자회사 소득에 대해 현지 법인세율로 법인세 과세	▶	배당금을 모회사 소득에 포함하여 국내 법인세율로 과세 (현지 납부세액은 공제)
개정안	(상 동)		배당금을 모회사 소득에 불포함

3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

구 분	현 행				개 정 안	
	일반법인		지주회사		(일반-지주 구분 없음)	
	지분율	익금불산입률	지분율	익금불산입률	지분율	익금불산입률
상 장	100% 30~100% 30% 미만	100% 50% 30%	40~100% 30~40% 30% 미만	100% 90% 80%	50% 이상 30~50% 30% 미만	100% 80% 30%
비상장	100% 50~100% 50% 미만	100% 50% 30%	80~100% 50~80% 50% 미만	100% 90% 80%		

• 일자리·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
1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

현 행

① **고용증대 세액공제**(모든 기업)
: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

구 분	공제액 (단위: 만원)			
	중소 (3년)		중견 (3년)	대기업 (2년)
	수도권	지방		
상시근로자	700	770	450	-
청년 정규직, 장애인, 60세 이상 등	1,100	1,200	800	400

② **사회보험료 세액공제**(중소)
: 고용증가인원(2년) X 사용자분 사회보험료
X 공제율(일반 50%, 청년·경력단절여성 100%)

* **청년 범위**(①, ②): 15~29세

③ **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**(중소, 중견)
: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(2년 지원)
X 공제율(중소 30%, 중견 15%)

④ **정규직 전환 세액공제**(중소, 중견)
: 정규직 전환 인원(1년 지원)
X 공제액(중소 1,000, 중견 700)

⑤ **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**(중소, 중견)
: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(1년 지원)
X 공제율(중소 30%, 중견 15%)

개 정 안

〈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〉

■ **기본공제**
: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

구 분	공제액 (단위: 만원)			
	중소 (3년)		중견 (3년)	대기업 (2년)
	수도권	지방		
상시근로자	850	950	450	-
청년 정규직, 장애인, 60세 이상, 경력단절여성 등	1,450	1,550	800	400

* **청년 범위**: 15~34세

■ **추가공제**
: 인원수 X 1인당 세액공제액(1년 지원)

구 분	공제액 (단위: 만원)	
	중소	중견
정규직 전환자, 육아휴직 복귀자	1,300	900

2 국가전략기술 및 중견기업 투자 세제지원 확대

시설투자 공제율	현 행				개 정 안			
	당기분			증가분	당기분			증가분
	대	중견	중소		대	중견	중소	
일 반	1%	3%	10%	3%	1%	5%	10%	3%
신성장 · 원천기술	3%	5%	12%	3%	3%	6%	12%	3%
국가전략기술	6%	8%	16%	4%	8%	8%	16%	4%

3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

구 분	현 행	개 정 안
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(19%) 특례	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적용	적용기간(5년) 폐지
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	5년간 50% 감면	10년간 50% 감면
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	5년간 50% 감면	10년간 50% 감면

4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

구 분	현 행	개 정 안
행사이익 비과세 한도	연간 5천만원	연간 2억원 (누적한도 5억원 신설)
분할납부 대상	비상장·코넥스 상장 벤처기업	코스닥 · 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추가

•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겠습니다.

1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·공제한도 등 확대

구 분	현 행	개 정 안
적용대상	중소기업 중견기업(매출액 4천억원 미만)	중소기업 중견기업(매출액 1조원 미만)
공제한도	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~20년 미만: 200억원 20년 이상~30년 미만: 300억원 30년 이상: 500억원	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~20년 미만: 400억원 20년 이상~30년 미만: 600억원 30년 이상: 1,000억원
피상속인 지분요건	최대주주 & 지분 50% 이상 (상장법인 30%) 10년 이상 계속 보유	최대주주 & 지분 40% 이상 (상장법인 20%) 10년 이상 계속 보유

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

구 분	현 행	개 정 안
사후관리기간	7년	5년
업종변경 범위	중분류 내 변경 허용	대분류 내 변경 허용
고용유지의무	1 & 2 유지 1 (매년)정규직 근로자 수 80%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% 이상 2 (7년 통산)정규직 근로자 수 100% 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% 이상	2 유지 1 〈삭제〉 2 (5년 통산)100% → 90%
자산유지의무	가업용 자산의 20% (5년 내 10%)이상 처분 제한	20%(5년 내 10%) → 40%

•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.

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, 대주주 기준 완화, 증권거래세 인하

		23.1.1.	25.1.1.
현 행	상장주식 양도차익	대주주 과세	금융투자소득세 도입
	증권거래세(코스피/코스닥)	0.23%	0.15%
개정안	상장주식 양도차익	고액주주만 과세	금융투자소득세 도입
	증권거래세(코스피/코스닥)	0.23% → 0.20%	0.15%

* 고액주주 양도세 과세대상('23~): (지분율) 코스피 1%, 코스닥 2%, 코넥스 4% ▶ 삭제
(보유금액) 종목당 10억원 ▶ 종목당 100억원
(판정기준) 친족 등 포함 합산 ▶ 본인만 계산

민생 안정

• 서민·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.

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

현 행		개정안	
과세표준(단위: 만원)	세율	과세표준(단위: 만원)	세율
~ 1,200	6%	~ 1,400	6%
1,200 ~ 4,600	15%	1,400 ~ 5,000	15%
4,600 ~ 8,800	24%	5,000 ~ 8,800	24%
8,800 ~ 15,000	35%	(좌 동)	
15,000 ~ 30,000	38%		
30,000 ~ 50,000	40%		
50,000 ~ 100,000	42%		
100,000 ~	45%		

2 근로·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

근로장려금

구 분		현 행	개정안
최대 지급액	단독	150만원	165만원
	홑벌이	260만원	285만원
	맞벌이	300만원	330만원
재산요건		2억원 미만	2.4억원 미만

자녀장려금

구 분		현 행	개정안
최대 지급액	자녀 1명 당	70만원	80만원
재산요건		2억원 미만	2.4억원 미만

3 주거비·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

구 분	현 행	개정안
월세세액공제	최대 12%	최대 15%
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	연 300만원 한도	연 400만원 한도
대학입학 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세액공제	(공제 없음)	15%
식대 비과세 한도	월 10만원	월 20만원

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

구 분	내 용		
	현 행		개정안
공제율	신용카드	15%	(좌 동)
	현금영수증·직불형카드 등	30%	(좌 동)
	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 사용분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)	30%	영화관람료 사용분 추가
	전통시장·대중교통 사용분	40%	'22.7.1 ~ 12.31. 대중교통 사용분은 80%

공제한도

현 행					개정안			
공제한도 \ 총급여		7천만원 이하	7천만원 ~1.2억원	1.2억원 초과	공제한도 \ 총급여		7천만원 이하	7천만원 초과
기본공제한도		Min(총급여×20%, 300만원)	250	200	기본공제한도		300	250
추가 공제 한도	전통시장	100	100	100	추가 공제 한도	전통시장	300	200
	대중교통	100	100	100		대중교통		
	도서·공연등	100	–	–		도서·공연등		–

• 소상공인·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.

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·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지속 지원

구 분	현 행	개정안
착한 임대인 세액공제	'22.12.31.	'23.12.31.
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		'25.12.31.
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		'25.12.31.
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		'25.12.31.

•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겠습니다.

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

구분	해당 지역	감면기간
1	수도권(과밀억제권역 外 지역), 지방의 광역시, 중규모도시 등	5년 100% 2년 50%
2	기타 지역	7년 100% 3년 50%

구분	해당 지역	감면기간
1	수도권(과밀억제권역 外 지역), 지방의 광역시, 중규모도시 등	5년 100% 2년 50%
2	지방광역시·중규모도시 내 성장촉진지역, 인구감소지역, 고용·산업위기지역	7년 100% 3년 50%
	기타 지역	
3	성장촉진지역, 인구감소지역, 고용·산업위기지역 *단, 수도권·지방광역시·중규모도시 등은 제외	10년 100% 2년 50%

* □ : 현행 대비 감면혜택 확대 지역

•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하겠습니다.

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

구 분	현 행	개정안
일반	6억원	9억원
1세대 1주택자	11억원*	12억원

* '22년 한시적으로 11억원에 더하여 3억원 특별공제 적용

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

과세표준	현 행		개정안
	일 반	다주택	
3억원 이하	0.6 %	1.2 %	0.5 %
3~6억원	0.8 %	1.6 %	0.7 %
6~12억원	1.2 %	2.2 %	1.0 %
12~25억원	1.6 %	3.6 %	1.3 %
25~50억원			1.5 %
50~94억원	2.2 %	5.0 %	2.0 %
94억원초과	3.0 %	6.0 %	2.7 %

*법인 : (현행) 일반 3.0%, 다주택 6.0% 단일세율 → (개정안) 2.7% 단일세율

조세인프라 확충

•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.

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

구 분	현 행	개정안
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	반기별	월 1회
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	연 1회	월 1회

•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.

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('24년 시행)

구 분	현 행	개정안
적용대상	전문직 · 성실신고확인대상자	전체 복식부기의무자
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	1대 초과 승용차 관련 비용 50%	1대 초과 승용차 관련 비용 100%

•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.

글로벌 최저한세 도입

개 요	'24년부터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(15%)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 부여
적용대상	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7.5억 유로(약 1조 원)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
과세액	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(15%)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과세
신 고	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에 신고 필요(첫 해는 18개월)

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

•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.

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

현 행	개정안
세관장의 결정·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	(좌 동)
세관장이 결정·경정하거나 결정·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- 수입자의 착오·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귀책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	(좌 동) - ①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, ②동일 신고오류 반복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 허용

• 납세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.

1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

구 분	현 행	개정안
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	600달러 술 1병 (1ℓ, 400달러 이하) 담배 200개비 향수 60㎖	800달러 술 2병 (2ℓ, 400달러 이하) (좌 동) (좌 동)
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	600달러 술 1병 (1ℓ, 400달러 이하) 담배 200개비	800달러 술 2병 (2ℓ, 400달러 이하) (좌 동)

2 중소기업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

구 분	현 행	개정안
기준세액	30만원 미만	50만원 미만